

단일세율제도(Flat Tax) 개요 및 운영상황

- 지난 9월 루마니아 순방시 현지 공관장에게 검토를 지시하신 내용에 대하여 현지공관 보고 및 재정경제부 자료 등을 참고하여 분석한 내용을 보고 드림
- 90년대이후 동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도입·확산되고 있는 단일세율제도의 운영상황 등을 정리하였음

1. 단일세율제도 개요

- (개념) 효율성·단순성에 중점을 두고 모든 소득에 대하여 차등 없이 동일한 단일세율을 적용
 - 각종 비과세·감면·공제제도 폐지
- (이론적 근거) 1962년 작은 정부를 선호하는 **Milton Friedman**이 '자본주의와 자유(Capitalism and Freedom)'에서 최초로 단일세율제도 도입을 제안하여 이론적 기초 제공
- (장점) 조세의 효율성(Efficiency)·단순성·투명성 제고
 - 각종 공제·감면의 폐지 및 단일세율 적용에 의한 과세기반(Tax base) 확충 및 세율 인하가 가능
 - 고소득층의 조세회피 유인이 축소되고, 지하경제 양성화 유도
 - 세법이 단순화되어 국가의 징세 행정비용(Tax Administration Cost) 및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(Tax Compliance Cost) 최소화 가능

('06. 11. 6, 단일세율제도 개요 및 운영상황, 경제정책비서관실)

□ (단점) 세율구조의 역진성 및 대규모 재정수입 감소 가능성

- 단일세율로 전환시 (면세점 이하였던) 저소득층의 세부담 증가 및 고소득층의 세부담 감소가 전제되는바, 조세저항 우려
- 최저세율로 단일화하는 경우 대규모 세수감을 초래하고 이를 보충하기 위한 국가채무 증가 등 재정 리스크 우려

⇒ IMF·EU는 Flat Tax도입에 신중할 것을 권고

2. 각국의 도입·운영 현황

□ '90년대 이후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한 동유럽(구 소련권)을 중심으로 Flat tax 채택 국가 증가

구 분	에스토니아	러시아	세르비아	우크라이나	슬로바키아	루마니아
도입연도	'94	'01	'03	'04	'04	'05
현행세율	23	13	14	13	19	16

*라트비아(95년 15%), 리투아니아(01년 33%), 그루지아(04년 12%)

□ OECD 국가로서는 유일하게 슬로바키아가 도입하였으며, 일부 국가가 도입을 검토 중

- 슬로바키아는 '04년부터 기업소득 및 개인소득에 19%의 단일세율제를 시행하였으며, 부가가치세도 19% 적용
- 그리스 : '07년부터 25% 단일세율 도입 계획
- 폴란드 : '08년부터 15% 단일세율 도입 계획
- 독일 : '07년부터 25% 단일세율 도입계획을 세웠으나 05년 기민당(CDU) 총선 패배로 좌절
- 미국 : '96년, '00년 대선에서 Forbes 후보가 17% 단일세율 과세(기초공제)를 선거공약으로 제시

('06. 11. 6, 단일세율제도 개요 및 운영상황, 경제정책비서관실)

《루마니아 사례 분석》

□ 도입 현황

- (정치적 요인) '04.12. 총선·대선에서 JTA(진실정의동맹)가 사회민주당과 차별화를 위해 공약으로 제시하였으며, 집권 직후인 '05.1.1 시행*

* '05.1.1부터 개인소득 및 기업소득에 대해 16% 단일세 부과
(기존세율 : 개인소득세 18~40% 및 법인세 25%)

- (경제적 요인) 주변 국가들의 단일세율 도입에 영향을 받아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, 지하경제(40%로 추정) 양성화, 기업우선정책 시행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중점

□ 도입 효과

- 낮은 단일세율 적용으로 2005년 재정수입은 GDP 대비 1%정도 하락(법인세 GDP의 0.4%, 소득세는 GDP의 0.6% 감소효과)
- 고소득자들은 높은 세제감면효과(개인소득세 18~40%→16%)를 누린 반면, 저소득층의 감면혜택은 없어 빈부격차 심화
- 지하경제 양성화(06.8월 등록고용인구 전년 대비 50만명 증가)로 장기적으로 세수 기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
- 단일세율 도입에 따른 법인세 인하(25%→15%) 등으로 기업환경 호전 및 외자유치 확대에 긍정적인 효과

- 다만, 경제지표 호조는 단일세 도입보다는 EU 가입조약체결('05.4)이 더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

* 경제성장률 증가 : (05) 4.1% → (06. 상반기) 7.4%

* 외국인투자 증가 : (04) 42억유로 → (05) 52억유로 → (06^P) 70억 유로

⇒ 親기업환경 조성에는 기여한 것으로 평가 되나 빈부격차 심화 등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으며, 제도 도입의 효과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최소 4~5년의 시간이 필요